

司書의 資格基準에 관한 再檢討

가톨릭 醫大 圖書館
金 好 培

1. 머리말

도서관은 오늘날 教育的으로 社會的으로 또한 產業經濟에도 必須不可缺한 機關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教育水準이 向上되고 生活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도서관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素養 있는 국민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1980年 6月 課外禁止措置와 勉學零團氣 造成으로 因하여 波及된 도서관의 問題點을 모든 메스컴에서도 특집으로 다루어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도서관의 問題點은 주로 도서관의 施設과 藏書의 擴充에 重點을 두었으나 司書의 不足과 配置에 관해서도 매우 批判的으로 掲載하고 있다. 도서관의 施設이나 藏書의 擴充은 豫算의 뒷받침으로 얼마든지 補完할 수 있으나 司書의 資質은 스스로의 自己發展에 대한 努力도 중요하지만 國家的인 次元에서의 法的인 뒷받침이 先行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도서관의 業務를 맡기 위하여 필요한 條件으로서 우리는 受動的이던 能動的이던 司書資格을 認定하여 왔다. 그러나 政治·經濟·社會·文化의 發展으로 因하여 과거처럼 所藏된 藏書의 管理만을 遂行하는 保存的業務에서 所藏된 藏書의 活用に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資質을 키워야 할 時期가 到來한지 오래되었다. 이에 副應할 수 있도록 司書로서의 能力을 키우고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社會的인 地位를 向上시키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여러 側面에서 司書資格區分에 대한 意見들을 披擲하여 왔고, 紙面을 통하여 훌륭한 提言을 하여 왔으나 集約的인 論議가 없었다.

1963년 10월 28일 法律 제1424호로 도서관법이, 1965년 3월 26일 同法施行令이, 그리고 1966년 3월 23일 同法施行細則이 公布된 이래 우리는 과거 10여년 동안 國家發展의 一翼을 擔當하는 社會教育機關으로서 그 使命을 遂行해 나갈 수 있는 現代的인 概念의 도서관을 이룩하기 위하여 不斷한 努力을 기울여 왔다. 1978년 圖書館發展計劃을 樹立하는 作業과 도서관법 改定

案을 立案하는 作業을 推進하였고, 1979년 5월에 行政改革委員會에서 ‘도서관 行政改善을 위한 調查報告書’가 發表되었었으며, 이로 因한 새로운 圖書館法改定案作成의 必要性이 擡頭되어 圖書館協會에서 特別委員會를 構成하여 1979년 10월에 도서관법개정안을 作成하였다. 1979년 11월에 도서관법개정안(草案)을 提出하였으나 지금까지 國內情勢變化에 따른 여러가지 事情으로 推進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圖書館法內에 司書의 資格基準 및 待遇策에 대한 項目이 있지만 此際에 司書의 권익옹호 및 社會적 地位를 스스로 向上시키기 위한 努力의 一環으로 여러가지 側面에서 이를 檢討하고 集約된 意見을 再次建議하여 보고자 하며, 보다 높은 資質을 갖춘 司書로 하여금 도서관봉사의 改善을 圖謀시켜 보자는 意圖와 現在의 도서관법에서 規定하고 있는 司書職의 區分을 가지고는 더 이상의 社會적 권위나 專門職이라는 認定을 받기 힘들어 諦念狀態에 있는 司書들이 自己開發을 하도록 鼓舞하는 方法으로서 司書資格基準의 새로운 檢討를 하게 되었다. 筆者는 圖書館界 여러 人士들의 意見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사서자격기준에 대한 所見을 披擲하고자 한다.

2. 司書養成教育機關의 現況과 問題點

우리나라에서 近代的인 도서관학 교육은 1946년 4월에 開講된 朝鮮圖書館學校(國立圖書館附設)를 始作으로 볼 때 35년이란 세월이 되며, 이 學校는 1950년 6.25 動亂으로 閉校되었는데, 오늘날까지 現役으로 근무하고 있는 많은 도서관계 指導者를 포함한 77名의 正司書를 輩出하였다.

그 후 西歐的인 圖書館學教育의 시작은 1956년 美國의 Peabody 大學 教育使節團이 韓國의 教育復興을 돕고자 來韓하여 1957년에 우리나라 도서관계의 요청에 의해 延世大學校에 도서관학과를 新設하여 最初의 도서관학 正規課程이 大學에 시작되었던 것이다. 한편, 같은 해인 1957년 연세대학교에 韓國圖書館學堂(1年課

程)이開設되어 당시 도서관 中堅職員の 教育에 置重함과 동시에 司書敎師의 教育도 進行하여 現場의 人員不足現狀을 解消시켜서 司書養成機關이 制度化되기 始作하였다. 도서관학당 司書課程은 219名의 正司書を 輩出하고 1971년 2월 제11회 졸업을 끝으로, 司書敎師課程은 1963년 132名의 正司書を 輩出, 中斷되었다.

1980년 10월 現在 全國 17個大學校에 도서관학과와 7個專門大學에 도서관학과가 設置되어 있으며 5個大學校에 正規大學院課程이 設置되었고 成均館大學校와 延世大學校에 博士課程이 設置되어 發展하는 社會에 副應할 수 있는 도서관계 高級人力輩出에 功헌하고 있다.

1) 大學 圖書館學科

1957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가 신설된 이래 1959년에 이화여자대학교, 1963년에 중앙대학교, 1964년에 성균관대학교, 10년 후인 1974년에 경북대학교, 1976년 숙명여자대학교, 1977년 효성여자대학, 1979년 부산여자대학교와 청주대학 1980년에는 충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와 계명대학교, 그리고 서울에 야간대학으로 덕성여자대학, 동덕여자대학, 상명여자사범대학과 명지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대학과정 도서관학과는 모두 17개 대학에 달하고 있으며, 1981년도에 서울여자대학, 한성대학, 숭전대학교 대전분교, 한국사회사업대학, 부산산업대학 등 5개 대학에 도서관학과 신설이 승인되었다. 이로써 來年度에 이르러서는 全國에 모두 22個의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설치되게 되었다.

1980년 現在 졸업생을 배출한 전국 6개 대학교의 도서관학과 출신이 모두 2,000여명이 되며, 앞으로 4~5년 후에는 그 수는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地域的으로는 來년에 新設될 大學까지 包含하면 서울에 11個大學, 慶北에 4個大學, 釜山과 忠南地域에 2個大學, 그리고 忠北, 全南, 全北에 各各 11個大學이 配置되어 있어 地域의 分布로 보아 절반이 서울에 集中되어 있고, 大邱에 4個大學이 있으나 京畿, 江原, 慶南, 濟州道에는 아직까지 圖書館學科 不毛地로 남아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도서관학과의 量的인 面보다 質的인 問題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다. 도서관학과 신설을 허가한 文教部에도 責任은 있으나 學生들에게 專門敎育을 받게 할 수 있는 資料도 施設도 갖추지 못한 圖書室程度의 規模 밖에 안 되는 大學에 圖書館學科를 新設하여 增員에만 열을 올리는 大學當局에도 問題가 있다.

司書を 敎育한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도서관을 훌륭하게 運營케 하고 圖書館界의 現實的인 環境을 意識하여 未來를 展望할 수 있도록 하며, 現場에서의 圖書館利用을 위한 知識을 얻게 하기 위하여도 도서관학과

를 설치한 대학은 內實面에도 力點을 두어야 하겠다.

2) 專門大學 圖書館科

2年制 大學으로 1970년 부산여자전문대학에 도서관과(주 야)가 신설되어 準司書資格證을 授與한 이래 1972년 중의여자전문대학(주 야), 1974년에 계명실업전문대학(주 야)과 한국사회사업대학병설전문대학(주 야), 1979년에 강남사회복지학교, 동의여자전문대학, 설봉여자실업전문대학에 도서관과가 신설되어 7개 전문대학에 도서관과가 있다. 年間 700여명을 배출할 수 있으며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소위 補助司書로서의 人力을 需給하기 위하여 또한 實務人力을 養成하는데 그 必要性이 充分히 認定되고 있다.

專門大學이라고 하지만 實際業務를 處理한다는 면에서는 授業年限이 짧다 뿐이지 4年制大學과 거의 같은 敎育課程을 履修하고 있다. 단지 2年制이므로 4年制大學과 같이 汎敎養的인 知識과 主題背景의 敎育이 強調되지 못하고 있으나 才能을 研磨하고 도서관인으로 필요한 직업인을 양성하여 도서관계로 배출되고 있으므로 專門大學課程은 크게 功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3) 短期課程

1965년 成均館大學校 韓國司書敎育院에 正司書課程과 準司書課程이 設置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1967年度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正司書와 準司書講習課程을 통하여 資格證을 수여하고 있다. 司書資格基準에 대한 檢討의 一環으로서 上記 2個 機關의 講習課程의 問題點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敎育機關도 아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司書資格 取得을 위한 도서관학 강습을 실시하여 오고 있는 것을 모든 도서관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적극 반대해 오고 있다. 강습의 目的은 도서관의 專門職을 確保하여 각 圖書館運營의 圓滑한 運營과 發展을 期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강습기간은 50일로서 各種圖書館職員中 高等學校卒業者 또는 同等 이상의 學歷이 있는 者로서 도서관司書業務에 2年 이상 從事한 經歷이 있는 者를 主對象으로 하고 있다. 이 短期講習課程은 專門職을 確保하기 위한인데 不過 50일 간의 강습만으로 그 敎育目的을 達成하고 專門職으로서의 자격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司書專門職의 質的 低下 및 司書職의 權위를 위해서라도 過渡期的인 施行은 앞으로 삼가하여야 할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 특수과정의 준사서 과정도 역시 국립중앙도서관 단기 강습과정의 경우와 같이 現職者를 그 主된 對象으로 하고 있는데 高等學校卒業者를 對象으로 形式上 入學試驗은 치루지만 書類上 缺格事由가 없으면 거의 入學이 許可되고 있는 것이다.

司書의 專門性을 社會的으로 認定받을 수 있도록 앞

에서言及한 바와 같이 앞으로 正規教育機關에서 배출되는 正司書의 人力과 특히 準司書의 人力이 年間 700 여명에 달하고 있는 現時點에서 그러한 과도기적인 단기교육을 계속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국립 및 공립도서관에 司書職을 確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短期課程이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으나 事實이 그러하더라도 自體 無資格職員들만을 對象으로 하고 資格證 발급을 피하여 강습에 의한 司書資格取得制度는 止揚하고 司書의 養成은 教育을 專門적으로 擔當하고 있는 도서관학과에 일임함으로써 司書에 대한 資質을 높이고 學問의 基礎와 實際가 一致될 수 있는 機能을 가지도록 하여야 되겠다.

3. 司書職의 專門性

1960年代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대학과정의 도서관학과는 단지 서울에만 4個大學이 集中되어 있었다. 그러나 來年 1981年度에는 正規大學課程에 22個의 도서관학과가 설치 증설되어 司書의 養成도 大幅 增加되는데 이것은 社會의 需要가 그만큼 커져감에 따른 圓滑한 供給의 뜻도 있었으나 司書職이 社會로부터 점차 專門性을 認定받게 되었다는 事實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 專門性은 반드시 資格을 갖추게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司書職을 專門職種으로 認定하고 司書資格證制度를 強化·實施하고 있다. 과거에는 각 도서관에서 자유로히 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하여 왔던 관제로 무자격 직원이 많이 근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그 여과가 남아 있어 教育機關인 學校와 大學이나 研究所 등의 專門圖書館에서도 他職種에서 無能하다고 認定된 無資格職員을 도서관으로 轉補發令하여 司書들을 분노케 하는 경우가 있다. 公立圖書館의 경우도 司書職을 3級乙類로 局限하고 있기 때문에 結果적으로 中核의 管理職을 擔當하고 있는 行政職과 그의 補佐役 밖에는 하지 못하는 司書職 간의 自然的인 意見對立과 마찰이 일어나며, 이 마찰은 司書職의 無氣力과 폐비의 식만이 조장되고, 이로써 도서관발전의 沮害要素가 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圖書館政策의 不在에서 起因된 것이다.

지금까지 司書의 社會的地位와 專門性과 主體性과 處遇問題 등을 先進國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것을 考察하고 比較하는 등 많은 論文들이 發表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提言들이 하나도 改善된 것이 없다. 우리는 단지 이를 社會的, 政策的, 經濟的인 여러가지 外的인 要素에 그 責任을 轉嫁시키는 데서 그치고 말았다. 우리나라에 알맞는 도서관정책의 樹立과 더불어 우리 文化와 現實에 적합한 韓國的인

도서관체계를 確立하여 司書職이 社會的인 人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꾸준히 努力하여야겠다.

病院의 醫療技士가 아무리 오래 病院에 근무하여도 醫師가 될 수 없다. 法院의 書記가 몇십년을 근무하여도 判事나 檢事가 될 수는 없다. 그들이 醫師나 判檢事가 되기 위하여는 醫科大學을 卒業하고 兩者는 供히 考試에 合格하여야 한다. 그러나 無資格 도서관직원은 2년만 근무하여 50일 또는 1년간 受講하면 司書가 될 수 있어 司書資格證은 要式行爲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았으며, 資格證도 과거에는 문교부장관 명의로 발급되던 것이 국립중앙도서관장 명의로 발급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社會的으로 專門性을 인정 받으려 하고 切우개선을 요구한다고 하여 社會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高等學校를 졸업하고 도서관에서 2년간 從事하여 강습회를 통하면 準司書가 되고 그 후부터 3년 동안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또 강습회를 통하면 高等學校卒業後 5년만에 正司書가 될 수 있어 4년제 학부과정의 도서관학과를 志望할 필요 없이 직업인으로서 도서관에 就業하는 기회만 가지면 되는 것이 現行司書職員 資格區分의 모순점이 아닐 수 없다. 大學圖書館의 館長은 大學當局에 의하여 教授가 補職配分均額式으로 자주 교체 임명되고 있어 自體的인 정책수립에도 문제가 있다. 學歷, 資格, 地位에 따라 差等を 두고 대우를 하여 우리도 司書가 大學圖書館長이나 副館長 또는 教授級의 地位는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大學이 스스로 專門職으로서 地位를 부여할 수 있도록 現行司書資格證制度의 과감한 시정과 主題專門司書의 養成 등에 따른 改革이 뒤따르지 않고는 司書職의 專門性은 도서관從事者들의 主觀的인 要求 밖에 되지 않으며 客觀的인 社會의 人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다.

4. 現行 司書資格區分의 問題點

司書職은 그 業務의 特殊性에 있어서 一般職과는 區別되는 技術과 知識을 要하는 特殊專門職으로서 그에 따른 特別한 教育과 訓練을 쌓아야만 그 本然의 責任을 完遂할 수 있는 것이다. 司書職은 專門職이며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은 곧 資格을 要하는 制度에서 實證되는 것이다. 1965년 3월 26일 大統領 第4191號로 改正된 도서관법시행령 제 4조 司書職員의 資格과 區分에 대한 條文은

1) 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의 資格은 正司書와 準司書로 한다.

2) 正司書가 될 수 있는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로서 文敎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敎部長 官으로부터 그 資格證을 받은 者라야 한다.

① 大學의 도서관학과를卒業한 者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歷이 있는 者.

② 大學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력이 있는 者로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 이상 履修한 者.

③ 準司書로서 司書業務에 3年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160시간 이상 이수한 者.

3) 準司書가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서 文教部令이定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받은 者라야 한다.

① 初級大學卒業者(實業高等專門學校 卒業者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력이 있는 者로서 在學中 또는 卒業後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15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240시간 이상 이수한 者.

② 高等學校卒業者 또는 이와 同等 이상의 學력이 있는 者로서 司書業務에 2年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에 관한 학점을 2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도서관학에 관한 강습을 320시간 이상 이수한 者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司書의 區分을 正司書의 2等級으로 區分하고 있다. 圖書館奉仕의 質을 높이고 司書의 資質을 向上시키며, 管理階層을 專門化시키고 동시에 계속적인 努力과 研究에 의한 專門知識의 幅을 擴張시키기 위해서 正司書의 等級區分이 있어야 하겠다. 學問과 知識이 細分化되어 가고 高度의 産業發展과 經濟成長의 飛躍과 더불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主題專門司書들이 大學이나 特殊圖書館이나 公共圖書館 등에 더욱 더 必要하게 되었다. 여기에서의 專門司書는 專門職으로서의 司書가 아니라 專門司書로서의 資格인 것이다. 司書職 외에 主題背景을 지닌 이른바 法學專門司書, 經濟專門司書, 醫學專門司書, 農學專門司書 등으로 通稱될 수 있는 高級司書를 보다 많이 確保하기 위하여도 區分을 두어야 하겠다. 그리고 正司書 資格에 있어서 圖書館學科 出身이 아닌 다른 學科出身의 履修大學制度가 실시됨에 따라 副專攻制度가 義務化되어가고 있으며 在學中 20~25學點(學校에 따라 學點配定의 差異가 있음) 이상 履修케 되어 있다. 그러므로 履修學點을 學點으로 올리고 準司書로서 正司書가 되기 위하여는 大學의 도서관학과에 편입하여 正司書資格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면 강습과정을 폐지하여 司書의 資質向上과 司書의 專門性을 認定 받게 하여야 하겠다. 準司書는 專門大學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수가 대폭증가되므로 우리나라 도서관의 現實情과 미래의 展望으로 보아도 그 需給이 充分하므로 專門大學卒業生으로만 資格을 局限시키고 高等學校卒業者에게 부여하는 제 2항은 全部削除되어야 하겠다.

5. 司書資格區分의 是正 및 提案

現行 도서관법에서는 司書의 區分을 正司書와 準司書로 하고 있다. 現行 正司書가 社會的으로 그 專門性과

權威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正司書를 다시 區分하여 高級人力 또는 專門性的인 認定을 받을 수 있도록 現行 資格區分을 再考하여 보자는데 本發表의 目的이 있는 것이다. 도서관봉사의 改善을 도모시키고 社會的인 認識을 促求하기 위해서도 正司書는 도서관법 개정안을 초안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제안된 2等級으로 區分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새로 設定된 最上位의 司書職은 大學에 있어서는 教授, 專門圖書館에서는 研究員에 못지 않은 高級人力으로 社會的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 자격제한도 높여서 이 制度가 社會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데 目的이 있으며, 이러한 制度를 돕으로써 下位司書職이 上位司書가 되기 위하여 自己開發에 努力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館界에서 종종 專門司書라는 用語를 使用하여 왔다. 그러나 主題別 專門司書는 圖書館의 部署設定의 한 類型으로서 主題別 閱覽室制度의 必要性이 時代的인 요청에 따라 高潮되어 감으로써 生기 內容上의 區分이지, 어떠한 等級을 意味하는 用語는 아니다. 그리고 專門司書로 인정될 혼선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1급정사서(혹은 1級司書) 2급정사서(혹은 2級司書), 準司書로 區分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資格基準에 있어서도 管理階層을 專門化시키고 계속적인 努力과 研究에 의한 專門知識의 幅을 擴張시키기 위하여 表와 같이 提案한다.

6. 맺는 말

社會와 學問의 變遷에 따라 既存司書들이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定期的인 再教育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一定한 期間을 두고 再教育을 持續的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 전문직 단체인 도서관협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그 활동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리하여 도서관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도서관학 교수들과 三位一體가 되어 좀더 적극적이고 강화된 도서관육성책을 이룩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서들의 권익옹호와 자질향상에 先導的인 역할을 담당하여 주기를 바란다. 그동안 도서관법 개정안 작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司書의 資格基準

正司書 (1級)	正司書 (2級)	準司書
1. 圖書館學 博士學位를 所持한 者	大學의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者	1. 專門大學 도서관 학과를 卒業한 者
2. 正司書(2級)로서 碩士學位를 소지하고 도서관학 論文 2篇 이상을 發表한 者.	學歴이 있는 者로서 文教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에서 圖書館學敎科 目을 30學點 이상 履修한 者	2. 專門大學이 상의 學력이 있는 자로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도서관학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者
3. 正司書(2級)로서 도서관실무경력 10年 이상과 도서관학 논문 4篇 이상 發表한 者.		
4. 正司書(2級)로서 博士學位 所持者		